

<별표 13> <개정 2008.12.26, 2013.10.22, 2015.10.21>

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및 신탁업자의 전문인력

(별표 2 및 제4-93조제7호·제9호 관련)

1.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: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

가. 경영학, 경제학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융자·개발·운용·자문업무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업무(이하 이 항에서 "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"라 한다)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

나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
다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

<개정 2015.10.21.>

라.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

마. 별표 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<개정 2015.10.21.>

2. 신탁업자의 준법감시전문인력 : 다음의 기관에서 법규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준법감시업무부서에 근무하는 자

가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

나. 외국 금융투자업자

다. 「국가재정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

3. 신탁업자의 계산전문인력 : 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4.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 : 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 제13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